

##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수입사용에 관한 시행세칙

#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시행세칙은 중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직무발명규정 제27조(시행세칙)에 근거하여 동 규정에 의한 연구결과 활용에 따른 기술실시에 필요한 계약업무와 기술료의 수입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시행세칙은 본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, 또는 수행 중에 얻어진 지식재산권, 노하우(Know-how) 등의 기술실시가 가능한 기술에 적용한다. 다만, 관계법령 등으로 기술실시에 대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 세칙에도 불구하고 동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.

**제3조(용어정의)**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

- ① “지식재산권”이라 함은 산업재산권, 저작권, 신지식재산권 등을 말한다.
- ② “기술실시”라 함은 대학교의 보유기술에 대해 전용실시, 통상실시 및 양도 등의 방법에 따라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.
- ③ “전용실시권”이란 본교(기술공급자)와 기술도입자와의 설정계약으로 정한 일정한 범위(기간, 장소, 실시내용)내에서 기술도입자가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- ④ “통상실시권”이란 본교(기술공급자)와 기술도입자와의 설정계약으로 정한 일정한 범위(기간, 장소, 실시내용) 내에서 기술도입자가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- ⑤ “기술료 보상금”라 함은 수입된 기술료 중, 이 세칙 제14조에서 정하는 보상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.

### 제2장 기술실시 계약

**제4조(사전협의)** 본교가 단독 또는 타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그 사용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, Know-how에 대해 외부 제3자(“이하 실시예정자”라 한다)가 사용, 활용 및 상업화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, 산학협력단은 당해 발명자 등의 의견수렴 및 협조를 받아 실시예정자와 접촉하여 실용화 가능성에 관하여 조사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한다. 다만 공공기관 사업 관련 법령이 기술 등의 실시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

---

**제5조(계약체결)** 산학협력단은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기술료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표준기술이전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지원기관별 양식이 있거나 계약상대방과의 협의하에 계약서 양식을 변경 사용할 수 있다.

**제6조(기술료 계약조건)** ① 기술료 계약조건은 아래 각호와 같이 설정한다.

1. 실시권의 종류 : 전용실시권, 통상실시권, 기술양도 등으로 설정한다.
  2. 실시료 : 실시료는 계약체결에 따른 정액기술료(선급기술료 포함)와 경상기술료, 마일스톤방식 기술료 등으로 구분한다.
  3. 실시기간 : 실시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 간의 합의로 결정하되, 타 법령 등의 규정, 제품 또는 기술의 수명, 기술수준, 시장성, 외국기술 비교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- ② 기술도입자가 자금영세 등의 이유로 계약이행 및 성공적인 실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, 기술도입자의 사업계획, 경영능력, 시장성 등을 검토하여 실시료를 일부 인하 조정할 수 있다

**제7조(기술사업화 지원)** ① 산학협력단은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및 부속기관, 교직원 등이 학교가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그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창업 등을 위한 양도 또는 실시권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.

② 전항에 따른 창업 기업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등도 본교 직무발명규정 및 본 시행세칙을 준용한다.

**제8조(계약의 해지)** ① 본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실시자에게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
  2.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  3.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
- ② 실시자가 본교의 기술자체가 기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본교에 계약을 해지 요청하는 경우 실시자의 요구 및 주장사항과 동 건에 대한 당해 발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계약해지 여부 및 해약조치 사항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단장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수령한 기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③ 계약을 해지 한 후에는 연구결과 비밀누설 방지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고, 이후 실시자, 그 승계인 또는 제 3자가 본교의 허락 없이 동 연구결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.

**제9조(기술보증 및 배상)** 당해 발명자 또는 센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술실시 사업체와 기술

---

---

료 계약 시 본교의 기술수준 이상으로 동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(본교의 귀책 해약 시 손해배상 포함)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입금된 기술료 범위 내의 한도에서 기술보증 및 배상책임이 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.

### 제3장 기술료 수입 및 사용

**제10조(수입금의 재원별 관리)** 기술료 수입은 해당기술의 관련 연구과제의 유무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 관리한다.

1.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사업등에 따른 기술료
2. 관련 연구개발사업이 없이 발생한 기술료

**제11조(사용기준 및 절차)** 기술료 수입은 해당 기술의 관련 연구과제의 유무에 따라 다음 각호 및 절차를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-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사업등에 따른 기술료 : 사업주관 해당부처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. 다만,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징수된 기술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개발사업이 없이 발생한 기술료에 준하여 사용한다.
  1. 기술이전사업비 및 지식재산출원등록비(2009.12. 1 신설)(2012.5.1. 호 변경)
  2. 1을 제외한 비용 중 발명자(50%이내) 및 중개자 보상금(10%이내)지급(2009.12.1 신설)(2012.5.1. 개정)
    3. 1,2를 제외한 비용 중 연구개발 재투자(50%이내) (2009.12. 1 신설)(2012.5.1. 개정)
    4. 총 기술료에서 1,2,3을 제외한 기관적립금(15%이내) (2012.5.1. 신설)
    5. 기타 용도 (2009.12. 1 신설)
- ② 관련 연구개발사업이 없이 발생한 기술료 : 보상금 지급, 교직원의 복리증진 또는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, 기술이전사업활동비,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등의 기타 용도에 사용한다. (2012.5.1. 개정)
  1. 기술이전사업비 및 지식재산출원등록비
  2. 발명자 보상금 지급
  3. 교직원의 복리증진
  4. 기술이전 기금 적립
  5. 기타 용도
- ③ 상기 1,2가 혼합되어 발생한 기술료 : 상기 ①, ②의 사용기준 순서에 따라 사용한다.

**제12조(계정설정)** ① 산학협력단은 기술료계정을 설정하여 기술료 수입 및 사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.

---

---

② 기술료 계정의 책임자는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.

## 제4장 기술료 보상금

**제13조(지급재원)** 기술료 보상금의 지급재원은 당해 기술료수입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14조(보상금 수급권자)** 기술료 보상금의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지식재산권으로 발생된 경우 : 지식재산권등록원부에 발명자로 명기된 자 및 기술이전전담부서 혹은 기술이전을 중개한 자
2. 소프트웨어로 발생된 경우: 프로그램 등록증에 저작자 또는 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자로 명기된 자 및 기술이전전담부서 혹은 기술이전을 중개한 자. 단, 저작자에 ‘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’ 이 포함된 건에 한함
3. 기타의 경우 : 본교 교원, 연구원 및 기술이전전담부서 혹은 기술이전을 중개한 자

**제15조(지급절차)** ① 담당부서는 기술료 수입시 그 수입내역을 연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책임자는 기술료 보상금을 다음의 양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,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한다.

1. 기술이전보상금신청서 (보상금제1호서식)

③ 기술이전전담부서 혹은 기술이전을 중개한 자에게는 기술이전기여자 보상금지급에 관한 지침에 의거 지급한다.

**제16조 (보상금 배분율)** ① 직무발명 규정 제 2조에서 명시한 특허권 · 실용신안권 · 디자인권 · 상표권 · 소프트웨어 등 산업재산권 및 기술노하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에는, 발명자에게 기술이전 관련 비용 및 기술이전 보전비를 순차적으로 공제한 후의 금액(이하 “순수입액” 이라 한다)에서 직무발명규정 제19조 및 동 시행세칙 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항목에 따라 지급한다. 단, 관련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관리규정 등에 따른다.

---

구분	직무발명 보상금		비고
	발명자 보상금	연구개발재투자	
유형 1	70% 이내	-	· 이공계 교원 기준 · 특허 및 관련 노하우 이전 ※ 총 70% 이내에서 발명자와 협의하여 조정
유형 2	50% 내외	20% 내외	
유형 3	-	82% 이상- 87.4% 이내	· 이공계 교원 기준 · 과학기술 노하우/물질이전 시 반영 · 산업체 과제의 간접비 징수율에 준하여 배정 · 교원 발명자 보상금 없음 · 학생 인건비는 50% 이내 반영(교원 제외) ※ 유형 1, 2, 3 중 발명자와 협의하여 조정
유형 4	-	82% 이상 91% 이내	· 인문사회예체능 교원 기준 · 연구개발 재투자로 배정하는 경우 산업체 과 제에 준하여 배정(82%)하고, 배정차액은 인문사 회예체능 교원 국가 R&D 사업 간접비 배분율에 따라 추가 배정 가능 · 교원 인건비 책정 가능

- ② 후속 연구개발 성격의 기술노하우 이전의 경우 교원 발명자 보상금 없이 (학생 인건비 50% 이내) 산정하는 경우 ‘유형 3’ 을 적용하여 산업체 과제의 간접비 징수율에 준하여 배정할 수 있다.
- ③ 인문사회예체능 교원의 저작권 등을 활용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에는, ‘유형 4’ 를 적용하여 산업체 과제 직접비율에 준하여 배정하고, 배정차액은 인문사회예체능 교원 기준 국가 R&D 사업 간접비 배분율에 따라 추가 배정할 수 있다.
- ④ 지급 유형에 관한 선택은 발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, 연구개발 재투자 지원 유형은 산학협력단 간접비 지원제도 변경에 따라 자동 변경된다.
- ⑤ 본 조 ①, ②, ③, ④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관리 규정 등에 따른다.

[본조 전문개정 2018.02.01.]

**제17조(지급시기)** ① 기술료가 현금으로 입금된 경우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한다.

1. 발명자에게는 기술료 입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가 어려운 경우 발명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.
  2.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“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” 에 따른다.
- ② 기술료 수입이 Stock Option으로 인하여 미 발행 주식확인증과 주식보관증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당해 실시자의 주식발행 시점에 주식으로 지급한다.

---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이 시행일 이전 입금된 기술료 수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(시행일)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이 시행일 이전 체결된 기술이전계약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(시행일)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7년 9월 7일부터 (소급)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이 시행일 이전 입금된 기술료 수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---